

<p>제2020-29호 2020년 2월 13일(목)</p>	<p>시 보</p>  <p>여수시</p>	<p>시 정 지 표</p> <p>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40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20-437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제2020-1호)	9
○ 여수시 공고	제2020-446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0-446호)	17
○ 여수시 공고	제2020-450호	2020년 2월중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 참여자 모집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0-455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입법예고	20

기 타

회 람								
--------	--	--	--	--	--	--	--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3.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신월동 19-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1149)사업
 - 나. 명 칭: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996㎡
 - 나. 규 모: L=160m B=6.0~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0. 2.(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람기간: 2020. 2. 13.~ 2020. 2. 27.(14일간)
8.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여주시신월동	32-8	도	8	1	여주시국동1010주*아파트10*동108호	장**				
2	여주시신월동	32-1	전	23	20	여주시신월로561-8, 9동 9**호 (신월동, *호아파트)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여수지점)	
						여주시 중앙동 3*5-2	박인규				
3	여주시신월동	1093-1	창	1359	58	여주시 어항단지로 *(국동)	주식회사 부*	근저당권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주식회사 부산통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19 (대평동1가)	
4	여주시신월동	1093-7	대	316	74	여주시신월로561-8, 9동90*호 (신월동, 금*아파트)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여수지점)	
5	여주시신월동	31	대	516	1	여주시	공				
6	여주시신월동	31-5	도	24	3	여주시	공				
7	여주시신월동	27-6	대	820	240	여주시신월로561-8, 9동 9**호 (신월동, 금*아파트)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여수지점)	
8	여주시신월동	27	답	316	41	여주시신월로561-8, 1*동 **01호 (신월동, 금*아파트)	황**	근저당권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다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지상권	다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9	여주시신월동	27-4	답	363	80	여주시신월로561-8, 1*동 1*01호 (신월동, 금*아파트)	황**	근저당권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다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지상권	다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10	여주시신월동	27-5	답	478	102	여주시신월로561-8, 1*동 1*01호 (신월동, 금호아파트)	황**	근저당권	장시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3	
								근저당권	다압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지상권	다압농업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향동3길 11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협동조합		
11	여주시 신월동	27-2	장	414	1	여주시신월로561-8, 9동 90*호 (신월동, 금*아파트)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12	여주시 신월동	27-8	도	22	22	여주시신월로561-8, 9동 90*호 (신월동, 금*아파트)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13	여주시 신월동	19-2	답	876	80	여주시 봉산동 2*9-1*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교회				
14	여주시 신월동	26	답	426	146	여주시 신월동 2*	진**				
15	여주시 신월동	25-5	전	225	25	여주시 국동 6*6-*	문**				
16	여주시 신월동	25-2	대	202	1	여주시 국동 1**5-1	김**				
17	여주시 신월동	25	대	155	51	충남천안시서북구 한들3로35-26, 21*동 1*03호 (백*2차아파트)	윤**	근저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천안시지부)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천안시지부)	
18	여주시 신월동	25-1	대	40	25	기획재정부	국				
19	여주시 국동	1075	도	32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수아파트 20*-*01	홍**	근저당권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517-7	
						10**	유**				
						10**	정**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3길 18-**(신월동)	김**				
						국토교통부	국				
						전라남도 여주시 구봉길 41, 10*동 *02호 (국동, *봉아파트)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1*동 1*03호 (백*2차아이파크)	윤**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3길 1*-2*(신월동)	김**										
전라남도 여주시 소호6길 36, 20*동 1*01호(소호동, 주은금*아파트)	전**										
20	여주시	1075-	대	46	23	서울특별시	홍**	근저당	국제	경기도 성남시 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국동	10				강남구 일원동 734 상*수아파트 20*·*01		권	종합기 계주식 회사	대원동 517-7	
						10**	유**				
						10**	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18-**(신월동)	김**				
						국토교통부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1, 10*동 *02호 (국동, *봉아파트)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1*동 1*03호 (백*2차아이파크)	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1*-2*(신월동)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6길 36, 20*동 1*01호(소호동, 주은금*아파트)	전**				
계				6,949	996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지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여주시 신월동	32-1	건물 (창고)	슬래브	27.0	심** 박**	여주시 신월로 561-8, *동 90*호 (신월동, 금*아파트) 여주시 중앙동 3*5-2	근저당 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 가) (여수지점)	
2	여주시 신월동	27-6	건물 (공장) 건물 (공장) 건물 (공장)	가건물 가건물 가건물	7 75 160	심**	여주시 신월로 561-8, *동 90*호 (신월동, 금*아파트)	근저당 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 가) (여수지점)	
3	여주시 국동	1075-10	건물 (가옥)	슬레이트	25	홍** 유** 정** 김** 국** 김** 윤** 김**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수아파트 20*·*01 10** 10**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3길 18-**(신월동)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여주시 구봉길 41, 10*동 *02호 (국동, *봉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5-23, 21*동 1*03호 (백*2차아이파크)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3길 1*-2*(신월동) 전라남도 여주시 소호6길 36, 20*동 1*01호(소호동, 주은금*아파트)	근저당 권	국제 종합기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상 대원동 517-7	
4	여주시 신월동	25-1	건물 (가옥)	슬레이트	40	국 (기획재정부)					

위 치 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2. 13.

여 수 시 장

1. 지정번호 :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제2020-1호
2. 지정 위치·구역 및 면적
 - 2-1. 전남 여수시 묘도동 A지선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 적
전남 여수시 묘도동 A지선	가	34° 52' 06.500"	127° 39' 19.874"	274.54ha
	나	34° 52' 57.588"	127° 40' 27.231"	
	다	34° 52' 16.890"	127° 41' 16.850"	
	라	34° 52' 03.265"	127° 40' 58.877"	
	마	34° 51' 54.416"	127° 41' 09.663"	
	바	34° 51' 47.086"	127° 39' 40.649"	

- 2-2. 전남 여수시 묘도동 B지선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 적
전남 여수시 묘도동 B지선	가	34° 52' 38.906"	127° 45' 06.689"	12.83ha
	나	34° 52' 27.000"	127° 45' 09.000"	
	다	34° 52' 21.000"	127° 45' 03.000"	
	라	34° 52' 21.112"	127° 44' 49.559"	

2-3. 전남 여수시 삼일동 지선

위 치	지점	위도	경도	면적
전남 여수시 삼일동 지선	가	34° 51' 43.522"	127° 39' 25.873"	157.46ha
	나	34° 51' 52.229"	127° 41' 05.505"	
	B	34° 51' 46.795"	127° 41' 00.584"	
	A	34° 51' 35.508"	127° 39' 34.210"	
	D	34° 51' 33.776"	127° 39' 36.013"	
	C	34° 51' 44.580"	127° 40' 58.559"	
	다	34° 51' 24.647"	127° 40' 40.527"	
	F	34° 51' 12.364"	127° 40' 16.534"	
	E	34° 51' 15.681"	127° 39' 54.834"	
	H	34° 51' 14.050"	127° 39' 56.532"	
	G	34° 51' 11.396"	127° 40' 14.644"	
	라	34° 51' 06.266"	127° 40' 04.628"	

3. 수산자원의 종류 : 새조개

4. 관리수면의 관리자 : 여수시장

5. 어선·어구의 종류 및 수 : 양식장형망선 6척

6.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 2020. 2. 04. ~ 3. 31.

7. 채 취 량

7-1. 전남 여수시 묘도동 A지선 : 32.31톤

7-2. 전남 여수시 묘도동 B지선 : 3.75톤

7-3. 전남 여수시 삼일동 지선 : 37.97톤

8. 준수사항 및 제한조건 : 붙임 지정내용 및 조건 참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 및 조건

□ 지정내용

- 지정장소 : 여수시 묘도동 A지선, B지선, 삼일동 지선
 - 붙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참조
- 지정기간 : 2020. 2. 04. ~ 2020. 3. 31.
- 포획량
 - 전남 여수시 묘도동 A지선 : 32.31톤 이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B지선 : 3.75톤 이하
 - 전남 여수시 삼일동 지선 : 37.97톤 이하
- 포획·채취 방법 : 각 지선별 양식장형망선 6척
- 포획·채취 어업인 : 여수시 관리수면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자

□ 지정조건

-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자는 지정내용과 조건을 준수해야하며,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자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지정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제3자가 개입하거나, 어업분쟁 발생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이 목적대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 어촌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분쟁 또한 이용 어촌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관리수면 이용조건 및 관리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어촌계)는 3년간 관리수면 이용을 배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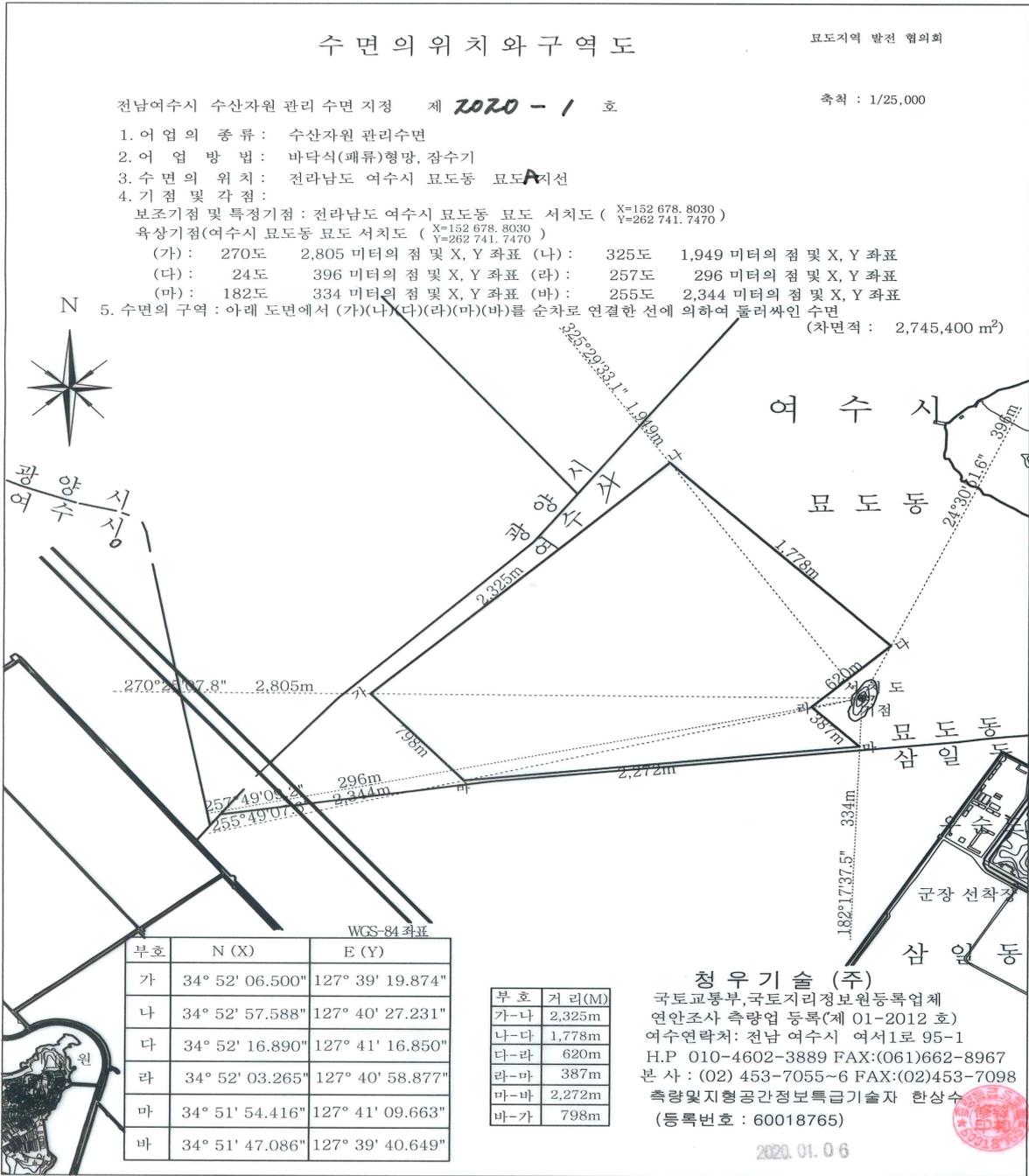
- 포획·채취 전 관리수면 200L의 개량부자로 어장표지시설(각 모서리, 각 변 100M당 1개씩 가로 50cm, 세로 30cm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 설치와 채취선 깃발표시를 하여야 함.
- 모든 사용어선 프로타 등에 관리수면 좌표를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와 일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브이패스(V-PASS)를 작업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켜놓아야 함.
- 폐기물 발생시 현장에서 수거 후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함.(처리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수면 관리·이용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우리시에 일일 보고하여야 함.
 -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일지
 -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적표
 -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 관리수면의 작업현황(일일보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한 다음의 협의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 협의한 지정조건(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시행, 보상 청구 금지, 어업분쟁 자체 해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삼일동 수면은 인근에 항만시설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공사 작업선 및 배사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로 인한 일체의 민원 및 피해보상이 불가함.
 - 묘도동 B수면은 LNG탱크터미널 건설 예정지로 침사지 설치 후 압밀수 및 지표수 방류로 인한 일체의 민원 및 피해보상이 불가함.
 -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상 필요하거나 협의 조건을 위반 시 여수시에 본 승인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요구 할 수 없음.
 - 어선 및 안전지도선은 항로 및 정박지 침범(횡단), 입·출항 선박 진로방해 금지하며

불가피한 항로횡단 또는 선박 이동시에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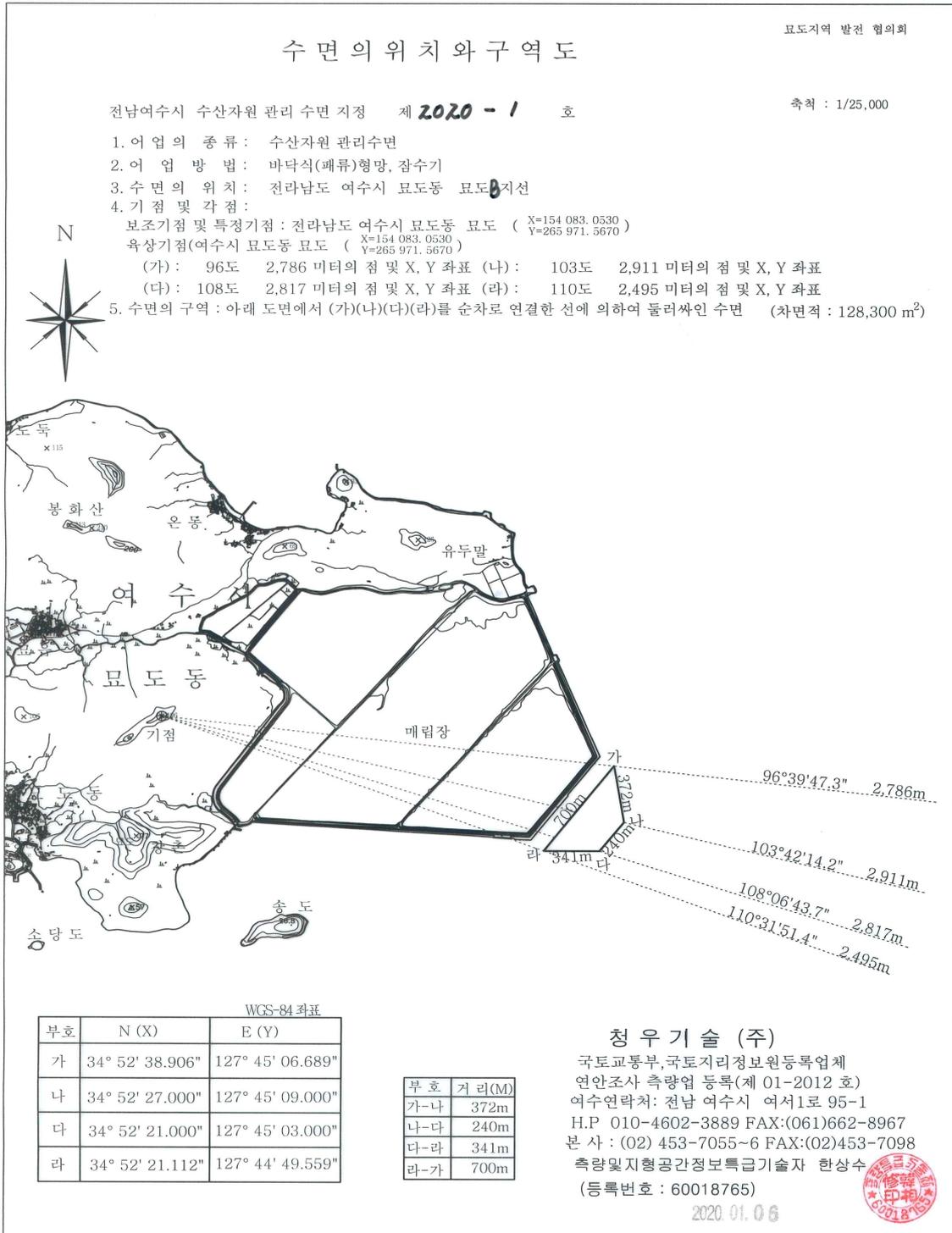
- 안전지도선은 자동식별장치(AIS) 및 무선통신장비(VHF) 설치하고 상시 VHF의 CH.67을 청취하여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호출 시 즉각 응답하여야 함.
- 어로구역 및 작업선 주간 형상물을 표시하고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어선 및 안전지도선 등은 작업 시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준수하여야 함.
- 감시선, 안전지도선 등을 조업구역에 배치하여 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함.
-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는 채취 어선 등 관련선박의 항행을 절대 금지하여야 함.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작업 전에 어선명단, 작업일정, 비상연락망 등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작업 시 설치된 항로표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 해역에 부표 설치 시 형상, 등색, 등질 등을 주변 국유표지와 다르게 설치하여야 함.

지정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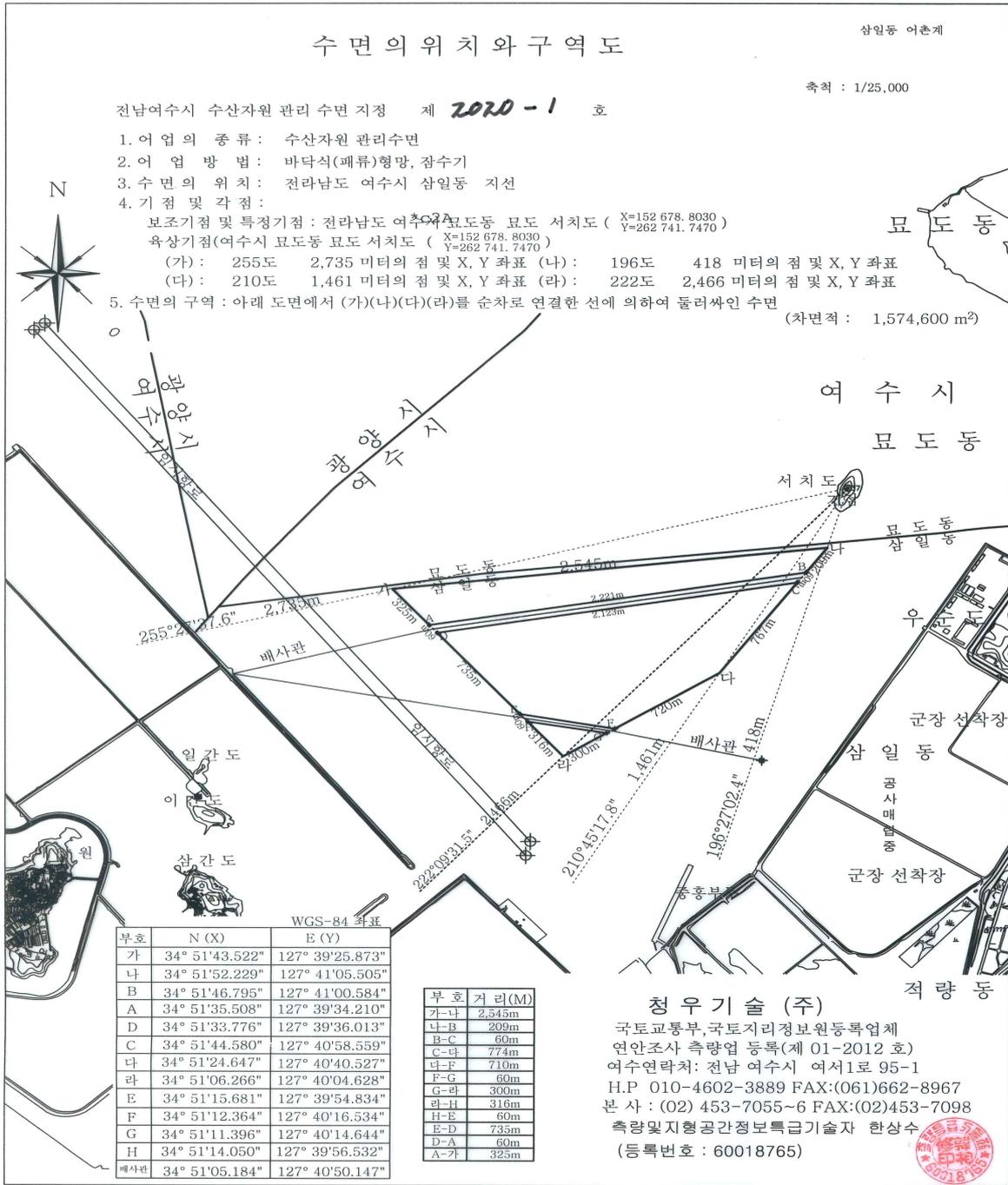
○ 묘도동 A지선



○ 묘도동 B지선



○ 삼일동 지선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여 수 시 장

1. 등록일 : 2020. 2. 13.(목)
 2. 등록사유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제5조에 의거 신규 등록
 3. 폐기사유 : 미사용 계인 폐기
3. 등록 공인 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인 영	관리부서	등록·폐기 사유
등록 (1676)	여수시투자박람회과분임재무관인		투자박람회과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제5조에 의거 신규 등록
폐기 (442)	여수시계인여서동		여서동	미사용 계인 폐기
폐기 (444)	여서동계인		여서동	미사용 계인 폐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 참여자 모집 공고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2월중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목 적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을 실시하여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실있게 구성·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운영개요

- 가. 교 육 명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
- 나. 일 시 : 2020. 2. 22.(토) 10:30 ~ 16:40
- 다. 장 소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제1강의실
- 라. 대 상 : 90명(2020년도 고1 30명, 고2 30명, 고3 30명)
- 마. 내 용 :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등
- 바. 운영방법 : 학년별 100분 강의
- 사. 강 사 : 장광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3. 모집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2. 17.(월) 00:00 ~ 2. 19.(수) 23:59

나. 모집인원 : 90명(2020년도 고1 30명, 고2 30명, 고30명)

다.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인터넷 사전예약제 / 선착순

라. 신청방법 : 참여 희망자가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시스템” 에 접속하여 개별 신청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http://ok.yeosu.go.kr>>접속

→ 교육/강좌 → 행복교육지원센터 → 교육신청

→ 교육명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특강> 클릭 후 참여 신청

4. 참여자 확정 : 2020. 2. 20.(목) ~ 2. 21.(금) / 개별 문자 알림

5. 기 타

가. 참여자로 확정된 후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이후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3개월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659-5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여 수 시 장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해 여수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6조)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농어촌 마을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2. 13. ~ 2020. 3. 3.(20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농업정책과장)

- 전 화 : 061-659-4404 팩스 : 061-659-5843

- 이 메 일 : uni2farm@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 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되,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

2.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 위원회의 구성)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농업정책과장
3. 수산경영과장
4. 산림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읍면동 위원회의 구성) ①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읍·면·동 산업·개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읍·면·동 행정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농업인상담소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마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전라남도와의 협력)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 한다.

제19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